

[별표 9] <신설 2010.12.13>

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(제111조 관련)

1. 일반 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,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다. 처분권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 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 문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가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	법 제30조 제1항제1호	등록 취소	-	-	-
나.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	법 제30조 제1항제2호	등록 취소	-	-	-
다. 업무정지기간 중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(법 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30조 제1항제3호	등록 취소	-	-	-
라.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감리 업무를 한 경우	법 제30조 제1항제4호	등록 취소	-	-	-
마. 임원이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(결격사	법 제30조 제1항제5호	등록 취소	-	-	-

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)					
바.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	법 제30조 제1항 제6호	등록 취소	-	-	-
사.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	법 제30조 제1항 제7호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3개월
아.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	법 제30조 제1항 제8호				
1) 부실시공으로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		업무 정지 8개월	업무 정지 12개월	-	-
2)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		업무 정지 4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6개월	-
3)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으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	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3개월
자.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(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)	법 제30조 제1항 제9호				
1) 3년 이상 입찰 참여 및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		등록 취소 업무 정지 8개월	-	-	-
2)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(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은 제외한다)			-	-	-
차.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	법 제30조 제1항 제10호	업무 정지 12개월	-	-	-
카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	법 제30조 제1항 제11호	업무 정지 12개월	-	-	-
타.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·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	법 제30조 제1항 제12호	업무 정지	-	-	-

재해가 발생한 경우	호	12개 월			
파.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	법 제30조 제1항 제13호	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			
하.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0조 제1항 제14호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6개월	업무 정지 12개월	-
거.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1호	경고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2개월
너.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·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2호	경고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2개월
더.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3호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3개월	업무 정지 3개월
리.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4호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2개월
머. 소속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5호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1개월
버.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6호	경고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1개월
서.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7호	경고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2개월	업무 정지 2개월
어.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8호	경고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1개월	업무 정지 1개월